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11. 23.(수)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⑥ 의결사항

가.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11-64-215~231)

- 제56차 전체회의('11.10.13)에 이어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주)은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주) 및 (주)대명정보 등 15개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은세텔레콤 3,992만원, SK브로드밴드 3,013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대명정보, (주)디앤에스네트웍, (주)리사, (주)미인네트웍스, (주)썸머네트웍스, (주)애플라이주, (주)에어플러스, 에스지네트웍스(주), (주)바른정보시스템, (주)스위티, (주)에스엠엔, (주)이앤에이솔루션, (주)폰친구, (주)비엠비, (주)타워정보통신

○ 주요 내용

① 조사결과

㉠ 기간통신사업자

-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060 번호를 부여하고(은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전화정보사업자의 요금변경 신청을 방치하였음(은세텔레콤)
- 이용약관과 다르게 공제초를 짧게 부여하거나(은세텔레콤), 성인인증 과정에 과금하였음(SK브로드밴드)
- 이용약관과 다르게 060 번호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은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 전화정보사업자

- (주)대명정보 등 8개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이용 안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함

* (주)대명정보, (주)디앤에스네트웍, (주)리사, (주)미인네트웍스, (주)썸머네트웍스, (주)애플라이주, (주)에어플러스, 에스지네트웍스(주) 등 8개사

- (주)폰친구 등 14개사*는 최초 성인인증을 거친 이용자의 전화번호 및 주민번호를 '회원'으로 관리하고, 이 전화번호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에는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함

* (주)대명정보, (주)디앤에스네트웍, (주)리사, (주)미인네트웍스, (주)썸머네트웍스, (주)애플라이주, (주)에어플러스, (주)바른정보시스템, (주)스위티, (주)에스엠엔, (주)이앤에이솔루션, (주)폰친구, (주)비엠비, (주)타워정보통신 등 14개사

② 근거법령

-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060 번호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전화정보사업자의 요금변경 신청을 방치하거나 공제초를 짧게 부여한 행위, 성인인증 과정에 이용요금을 과금한 행위는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전단의 금지행위(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됨

③ 시정조치

㉓ 금지행위의 중지

- 사전 심의없이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정보이용 안내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 정보이용 안내 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대명정보 등 15개 전화정보사업자)

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모든 사업자)

㉕ 업무처리절차 개선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 (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㉖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후 10일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모든 사업자)

④ 과징금 부과

- 온세텔레콤 : 3,992만원, SK브로드밴드 : 3,013만원

※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위반행위 재발시 과징금 상한액 부과, 위반행위 3회 반복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엄중 경고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2011-64-299)

○ 석재범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한국엠포스에 대해 시정 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33백만원 및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위반내용

-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누출하였으며, 이용자 및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보안조치를 하지 않음

② 처분내용

- ㉠ 시정명령(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행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되, 공표문안, 매체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 ㉢ 과징금 33백만원 부과
- ㉣ 과태료 900만원 부과

다. 2011년도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주)경인방송 등 5개 사업자
- (2011-64-300)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1. 12. 31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경인방송 등 5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 하기로 의결함

※ 재허가 신청 법인 현황

법인명	방송국명	대표자	허가일 (유효기간)
(주)경인방송	경인방송 iTVFM방송국	권혁철	2003.03.13 (2011.12.31)
(주)제주방송	JIBS제주FM방송국	김양수	2003.05.31 (2011.12.31)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제주FM방송국	손지애	2003.08.25 (2011.12.31)
(재)광주영어방송	광주영어FM방송국	강운태	2008.10.24 (2011.12.31)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FM방송국	고윤환	2003.12.03 (2011.12.31)

○ 주요 내용

① 재허가 조건

구분	부과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한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 •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제주 방송	·사외이사 운영 등 경영투명성 보장 이행계획을 2011년 12월까지 제출하고 매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광주영어 부산영어	·청취자위원회 구성시 외국인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구성할 것 ·모든 방송프로그램(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서비스 프로그램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비영어 프로그램은 제외)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② 재허가 권고사항

구분	부과 내용
공통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준수할 것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방송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정기적인 청취자 청취행태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청취자 불만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방송편성·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리랑 광주영어 부산영어	·방송권역내 거주(체류) 외국인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생활정보방송을 제공하되,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 ·영어로 방송을 하는 방송사간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방송품질 향상과 자원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광주영어 부산영어	·방송권역내 생활권이 공유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청취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경인방송	·과도한 협찬운동을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아리랑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활성화와 제주를 방문하거나 체류중인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③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제주FM라디오방송의 허가유효기간은 TV방송국과 통일을 위해 2년으로 한다.

라. 2011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 (2011-64-301)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1. 12. 31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 하기로 의결함

※ 재허가 신청 법인 현황

법인명	방송국명	대표자	허가일 (유효기간)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안병천	2009.08.11 (2011.12.3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차재경	2009.08.11 (2011.12.31)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분당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정호연	2009.08.11 (2011.12.31)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김광육	2009.08.11 (2011.12.31)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정수경	2009.08.11 (2011.12.31)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최성해	2009.08.11 (2011.12.31)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김용선	2009.08.11 (2011.12.31)

○ 주요 내용

① 재허가 조건

- ①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금지하고, 현재 편성하고 있는 보도 유사프로그램의 현황 및 개선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

- ②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편성책임자와 광고책임자를 분리·운영하고, 분리·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③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모국어로 진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방송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④ (사)성서공동체에프엠은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위한 재정확보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⑤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 ⑥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
- ⑦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② 재허가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은 1와트로 하고, 방송분야는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 관련 소식에 한정)’으로 하며,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마.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건 - (2011-64-302)

○ 이상학 통신정책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재신청한 KT에 대해 남은 이용자 수 및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안과 같이 조건부로 사업폐지를 승인하되,

-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14일)을 두고 KT가 동 기간 동안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김충식 상임위원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동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 표명

○ 승인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승인 조건]

1. (주)케이티는 기간통신사업의 일부(PCS사업) 폐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고 14일이 경과한 이후, 망 철거 등 PCS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즉시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주)케이티는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주)케이티는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4.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케이티에 아래와 같이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한다.
 - (i) 승인 조건 1항과 2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 (ii) '11.9.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정 접수한 PCS사업 폐지계획상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 (iii) 최종적으로 PCS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계획 적용 대상자 중 기존에 제4항 제(ii)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자 보호계획을 적용할 것.

7] 보고사항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운용시간 규제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발전 기반 확대를 위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운용시간(06시~익일 01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와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24시간 방송 가능) 의결 추진

8]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11. 30(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45)